

9월 22일부터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이 완화됩니다

-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시행
... 황색 도색,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

□ 9월 22일부터 ‘노란버스’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‘자동차규칙’) 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(전세버스)는 ①황색 도색, ②정지표시장치, ③후방보행자 안전장치, ④가시광선 투과율(70% 이상)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.

○ 또한, ①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,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같음하고,

- ③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, ④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김 혁 (044-201-3850)